

인문사회협동연구총서 2004-8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 국 여 성 개 발 원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인문사회협동연구총서 2004-8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책임연구원 : 박 영 군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강 순 원 (한신대학교 · 교수)

김 영 지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한 국 여 성 개 발 원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이 보고서는 2004년도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제 중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요약】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광범위한 차별관행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각종 차별은 보다 발전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별은 평등의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존재한다. 평등과 차별의 불일치는 의도적인 기만이나 또는 무지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차별은 때로 제멋대로의 감정적 반응이나 편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로 성차별을 들 수 있는데 여성은 아직도 교육이나 고용, 재산권, 군복무, 부양수당 등에서 남성에게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차별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구별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준이 보편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여성, 장애인, 고령자, 학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5대 차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부의 차별시정 정책이 구체성과 지속성, 그리고 실효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구조 분석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행가능한 차별개선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주역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랄 때 건강한 미래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차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차별관행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의식변화를 도모하고 차별의 사회적 파장을 해결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차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은 차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였다. 협동연구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하여 차별에 대

한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연구의 맥을 같이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교사와 학자, 대학(원)생,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 협력팀을 구성하였다. 연구협력팀의 구성원들은 연구자와 함께 프로그램의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차별현상에 대하여 분배와 인정이란 구조에서 고찰한 정의가 있다. 즉 이것은 특정 집단이나 인구 범주 내의 특정한 속성이나 정향, 활동양식을 이유로 그 집단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 삶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방식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 가지 개념은 참여와 관련한 정당화의 논리이다. 이 논리는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보다는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일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완전한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다.

차별의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저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정한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분야별 차별행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한 프로그램 개발의 영역은 장애인, 여성, 연령, 그리고 외국인 차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청소년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청소년의 책임으로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교육은 서구에서도 극히 최근에 등장한 문제이다. 인권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의 인권교육은 청소년의 정체성(identity)을 찾아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

다. 청소년이 자신만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자칫 이기적인 생각을 키우게 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다음으로 차별의 대상이나 영역별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합당한 근거 없이 편견에 따라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라 하여 능력의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장애를 떠나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진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별이라 할 수 있다.

1981년에 유엔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유엔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는 장애 문제를 재활이나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같이 인권의 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 각 국은 장애인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까지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이었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장애로 인한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삶의 모든 분야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는 영·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도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명시한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차별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특정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편견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상의 성차별에 대한 정의로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를

보면, 남녀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셋째, 연령차별은 특정한 연령대에 대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건강이나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그 사람의 특징을 평가하는 데 진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차별적인 행위로 판단한다.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명시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금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연령대에 불리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를 차별로 규정한다. 또 연령을 이용하여 직무·교육·기타 관계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폭력도 이에 포함된다.

넷째, 외국인 차별은 막연한 기준과 편견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불리한 대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단일문화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매우 낮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로 미국이나 일본 등지를 떠돌며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피부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경제권에 흡수한 경험이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1988년 이래 현재 약 50만이 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산업계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와는 다른 이들의 문화가 사회적 편견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차별개선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차별행위가 부당하고 이러한 차별의 결과는 사회통합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사회정의 실현과 차별행위 근절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에서 각종 차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2003년도에 새로 취임한 노무현 정부가 이미 여성, 장애인, 학벌,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5대 차별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한 가지 구체적 실천으로 정부는 차별시정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차별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이라 생각되며 이 연구가 정부의 차별개선 노력에 부응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차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4개의 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즉 장애인 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외국인 차별 등 4가지 영역이 그 틀의 가장 큰 범주이고 각 영역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현황을 보면 장애인 차별개선 프로그램이 9종, 성차별 프로그램이 9종, 연령차별 프로그램이 10종, 그리고 외국인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9종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차별개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부분에서 명시하였듯이 주로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몇 개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나 청소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속의 각종 청소년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급단위의 교실이나 학교 특별활동실, 강당 등 참가인원 및 대상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고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에서는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학생 청소년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인권 옹호단체나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의 한 가지 방법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목 차

연구요약

I. 프로그램 개발배경	2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3
나. 프로그램의 목적	4
2. 프로그램 개발절차	4
가. 관련 프로그램 수집·분석	4
나. 문헌자료 고찰	5
다. 연구협력팀 구성·운영	5
3. 프로그램 개발의 제한점	5
II. 프로그램 개발기저	7
1. 차별의 개념	8
가. 차별의 개념과 문제	8
나. 차별의 개념 규정	9
2. 청소년과 권리의식	10
3. 영역별 차별의 이해	11
가. 장애인 차별	11
나. 성차별	13
다. 연령차별	15
라. 외국인 차별	17

Ⅲ. 차별의 현상과 차별개선 정책	19
1. 차별의 현상(現狀)	20
가. 장애인 차별	20
나. 성차별	34
다. 연령차별	42
라. 외국인 차별	48
2. 차별개선 정책	49
Ⅳ. 프로그램 개발결과 및 활용방안	51
1. 프로그램 개발결과	52
가. 프로그램 개발현황	52
나. 영역별 프로그램 구성현황	52
2. 프로그램 활용방안	58
가. 프로그램 적용대상	58
나. 프로그램 활용방안	58
Ⅴ. 결론 및 제언	59
1. 결론	60
2. 정책제언	61
가. 차별개선 교육활동 강화	61
나. 차별대상 이해교육	61
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62
참고문헌	63

표 차 례

<표 III-1> 특수교육의 당면과제	22
<표 III-2> 장애인과 일반인의 연령대별 실업률	33
<표 III-3> 장애인과 일반인의 취업분포	34
<표 IV-1> 차별개선 프로그램 개발현황	52
<표 IV-2> 장애인 차별개선 개선 교육 프로그램 구성	52
<표 IV-3> 성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구성	53
<표 IV-4> 연령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구성	54
<표 IV-5> 외국인 차별개선 개선 교육 프로그램 구성	54

I



프로그램 개발배경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3
2. 프로그램 개발절차	4
3. 프로그램 개발의 제한점	5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이나 고용, 일상생활, 복지, 문화 등 각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차별관행이 존재해 왔다. 현재에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나 여성, 연령, 학벌, 인종 등과 관련하여 각종 차별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 이러한 각종 차별은 보다 발전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국가에 의한 차별개선 노력은 미흡하였다.

2003년에 출발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은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일방적 지배나 혹은 기득권층의 권익 독점을 견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국민의 권리의식을 일깨웠으며 인권의식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차별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차별을 개선하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행위를 시정해 가기 위해 차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명하고 차별관행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다학문적 접근방법에 의한 협동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차별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성숙된 국민의식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생산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의식변화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차별의 사회적 파장을 해결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차별개선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나. 프로그램의 목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적 행위를 시정하는 일은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 지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민 개개인의 소양 혹은 의식의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계몽과 청소년교육에 의한 근본적 변화를 통하여 차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청소년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주역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의 기초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보다 건전한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그 사회는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식중심 교육만을 고집할 때 건강한 시민육성은 멀어지고 그 결과는 미래사회의 쇠퇴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사와 청소년지도자들이 학교나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에서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접근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차별행위를 개선하고 국민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2. 프로그램 개발절차

가. 관련 프로그램 수집·분석

차별의 대상이나 혹은 영역별(장애인, 여성, 연령, 외국인)로 차별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각종 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국내외의 각종 연구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차별개선에 관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차별행위의 각 영역이나 대상에 따라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였다.

나. 문헌자료 고찰

그동안 우리나라도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의 가치가 크게 고양되고 인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장애인이나 여성,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각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강하게 전개되어 왔다. 사회정의가 실현된 선진 각국에서 법적·제도적으로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규약이나 프로그램 등 관련 문헌자료를 고찰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

문헌고찰과 더불어 수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협동연구 참가기관들 사이에 차별에 관한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차별의 이론적 논의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의 보편적 시민정신, 생애를 통한 학습 차원에서 청소년교육의 가치,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논거 등을 모색하였다.

다. 연구협력팀 구성·운영

차별의 대상이나 영역별로 교사 및 학자, 그리고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협력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연구협력팀의 전문가는 현장교육 경험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적용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이들 연구협력팀은 프로그램의 구성방향을 논의하고 또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데 함께 참여하였다.

3. 프로그램 개발의 제한점

이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 계층간 혹은 대상에 따른 차별의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차별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에서 시작되며, 상대방을 관용으로 수용할 능력이 없을 때 발생하게 된다.

2003년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각종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근절시키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 여성, 학벌,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등 5대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의 시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차별시정 기구를 만드는 등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차별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론적 근거와 정책 시행의 주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제와 관련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연구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소관 연구는 장애인과 여성, 연령, 그리고 외국인 차별 등 4가지 영역이나 대상에 대한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Ⅱ



프로그램 개발기저

1. 차별의 개념	8
2. 청소년과 권리의식	10
3. 영역별 차별의 이해	11

이 장에서는 차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시민정신, 그리고 각 영역에 따라 차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체적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차별의 대상이나 혹은 영역별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등 차별개선의 근원적 방안으로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1. 차별의 개념

가. 차별의 개념과 문제

차별(差別, discrimination)은 평등의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도 실체적으로는 존재하며 이 평등과 차별의 불일치는 의도적인 기만이나 또는 무지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또 차별은 때로 제멋대로의 감정적 반응이나 전통적 편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로서 성차별을 들 수 있는데 여성은 아직도 교육이나 고용, 재산권, 군복무, 부양수당 등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차별이 문제시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구별(區別, differentiation)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속성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준이 보편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구별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가의 여부는 특정 사회에서 승인되고 수용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2001년도에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1)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2)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3)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한편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5대 차별을 정부가 개선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차별시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차별시정 정책이 구체성과 지속성, 그리고 실효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에 대한 올바른 구조적 분석과 이에 근거한 아주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중장기별 차별개선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나. 차별의 개념 규정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수단의 한 가지 형태로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의미한다.

차별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분배와 인정이란 구조에서 고찰한 정의가 있다. 즉 특정 집단이나 인구 범주 내의 특정한 속성이나 정향, 활동양식을 이유로 그 집단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 삶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방식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물질적 측면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종속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주관적인 측면에서 정체성을 훼손하는 등과 같이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제도나 기준이나 조치, 그리고 그 실천을 차별적이라 한다(박영도, 2004).

또 다른 한 가지 개념은 참여와 관련한 정당화의 논리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보다는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일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완전한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참여의 평등이 현실에서 보장되려면 물질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참여자의 자립성과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도식이 모든 참여자에게 평등한 존중을 보여주어 사회적 존중의 실제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영도, 2004).

2. 청소년과 권리의식

1998년 10월에 선포된 「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을 내일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결과로 탄생한 것이 「청소년헌장」이며,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 주요 정책방안이 당시 수립되었던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다(문화관광부, 1998).

당시의 청소년헌장에 나타난 기본방향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나아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청소년의 책임으로 청소년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권 의식에 관한 한 연구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을 발췌하여 여기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최원기 외, 2003).

첫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이 협약의 존재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

둘째,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비단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성인조차도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한국에서도 이미 1990년대부터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운동이 일어났으나 아직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권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시민권에 관한 한국적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단순히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선거연령을 낮추고자 한다거나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걸맞는 청소년의 권리 기준과 적절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서구사회에서도 극히 최근에 들어 이슈로 등장한 문제이다. 인권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에서의 인권교육이란 청소년의 정체성(identity)을 찾아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용교 외, 1999).

이와 같이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만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자칫 이기적인 생각을 키우게 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미래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영역별 차별의 이해

가.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복지, 문화 등 각 영역에 걸쳐 합당한 이유 없이 편견에 따라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라 하여 능력의 있고 없음에 관계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장애를 떠나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진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은 1981년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기치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바 있으며, 유엔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는 장애 문제를 재활이나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장한 인권의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 보편성의 원리는 1975년 유엔의 「장애인권선언」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장애인권선언」의 3조는 ‘장애인은 인권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장애인도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려야 할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권의 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 각 국은 장애인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을 쏟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1990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게 되었고, 1994년 이후 호주, 영국, 캐나다, 홍콩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장애인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02년도에 「장애인기회균등에관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 필리핀의 권리장전 등 장애인 인권관련 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며 이제까지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이었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장애로 인한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삶의 모든 분야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는 영·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법은 장애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중 극히 한정된 부분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하고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위스컨신(Wisconsin)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차별금지 프로그램은 주정부 법률과 관련 연방정부 법률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와 차별금지에 대해 학교 지역구, 학부모, 그리고 학교 지역구 거주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법률은 「위스컨신 학생차별금지법」(Wisconsin's Pupil Nondiscrimination Laws)으로 '어떠한 학생이라도 공립학교와 학교 활동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으며 성별이나 인종, 종교, 임신, 출신국가, 부모의 지위, 정신적 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형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성차별

성차별이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하여 특정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 성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욱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사회제도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는 남성, 여성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고정관념은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법률상의 성차별에 관한 정의를 보면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고 동년 7월 1일에 시행된 우리나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제3조에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승진·전보·해고·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차별주의가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밖의 대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할 수 없는 이념이 되었다. 성차별주의를 극복하

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양성성이란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결국 성차별에 관한 개념 정의들 간의 공통성은 성차별주의에서 형성되고 정형화된 성에 관한 태도가 여성을 남성위주의 문화 속에서 예속적 존재로 왜곡시키며 비인간화시켰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성차별 문제로 대부분 사회에서 여성은 여러 사회적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당해 왔으며, 특히 성차별의 형태는 직장생활 속에서 더더욱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차별이란 직장의 한 구성원인 여성을 남성과 차별화 시켜 불평등하게 위치시키는 모든 이미지나 역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고용단계에 반영되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며 보통 모집, 채용, 배치, 승진 그리고 임금 등에서 남성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뜻한다.

즉 남녀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동일한 양의 노동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고용주의 주관적 편견이나 취향에 의해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고 남녀를 채용하되 직급과 호봉에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 임금차이가 처음부터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성희롱 실태에 대한 많은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약 80%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와 더불어 성희롱은 특히 직장 여성의 의식과 언어의 일부분이 되고 있음을 밝혀 주고 현재법을 뛰어 넘는 실질적인 고용차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50%에 달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취업 현장에서 남녀간의 실질적인 평등 관계라기보다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며 비하하는 남성 위주의 직장 문화 풍토를 반영하고 있음과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성희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성희롱은 그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피해를 받으면서 자

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없다는 점과 노동자의 능력에 따른 평가가 아닌 성적요구의 수용 여부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계약 관계의 변형을 통해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희롱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문제의 해결보다는 자발적 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성차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 연령차별

일반적으로 연령은 건강이나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령차별’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특정한 연령층에 대하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이 그 사람의 특징을 평가하는 데 진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차별적인 행위로 판단한다.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명시적으로 연령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연령층에 불리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령을 이용하여 직무·교육·기타 관계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폭력도 이에 포함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a).

연령차별의 금지 영역은 먼저 고용에서 일정 범위 내의 특정한 연령을 제한하여 모집하는 행위, 면접 등을 실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묻는 행위, 동일가치·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연령 소유자에게 임금 인상액·인상률 등을 다르게 하는 경우, 교육이나 배치·승진·해고·퇴직 또는 징계에 있어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화·용역·교통수단·주거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에 따라 대상인원을 선정하거나 교육 기회 등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연령’은 단지 생물학적 현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연령에 맞는’ 행동과 언어 사용의 잣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권위의 정당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연령이 권위의 정당화로서 기능할

때, 이것은 종종 연령이 어린 사람에 대한 무시로 나타난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논리 속에서 ‘연령이 높음’은 종종 무비판적인 상명 하복이나 연소자에 대한 무시, 시선·언어적 폭력 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조차 하지 않거나 성인과 다른 대우는 연소자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의 경험과 훈련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리로 연령이 높다고 해서 고용이나 임금,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세대간 차이에서 연유하는 각종 차별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서양에서의 연령차별(ageism)은 1970년대를 전후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점차 어린이와 10대, 20대의 젊은이 등 모든 연령층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b).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연령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의 경우,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며 성인의 종속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인식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연령차별의 범주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다른 성인집단의 연령차별 문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차별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거나 혹은 직접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등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알고 이를 지켜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인권 교육)과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연령을 주요 근거로 하는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단순히 연령이라는 기준에 의해 배제당하지 않으면서 모든 영역에 걸쳐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참여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큰 틀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권이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성별이나 인종, 계급,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적·사회적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볼 때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인권교육'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교육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만 주목하지 말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차별의 주체나 객체를 성인 내지 노인까지 확대하는 균형감 있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비롯하여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캠프나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 중에서도 '연령차별'에 대한 내용과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만큼 본격적인 차별개선 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령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비록 교육의 대상이 청소년이지만 청소년 자신의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과 해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성인이나 노인에 대해 가지게 되는 연령차에 대한 의식과 행위, 그리고 이들에 대해 느끼는 가치 등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연령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라. 외국인 차별

우리나라는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역사도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짧고 외국과의 교류도 과거에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외국과 외국인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있으며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으면서도 외국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특성이 있음으로 하여 타민족에 대한 수용성이 약하며 교육에서도 국제이해교육이나 교류 교육 등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

가 미약했던 데에도 귀인(歸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면서 과거 전형적인 인력 수출국이었던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또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대회'라는 국제행사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은 새로운 신천지로 비쳐졌고, 마침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는 아시아의 젊은이들은 꾸준히 늘어나게 되었다.

다른 한편 1987년 민주화투쟁은 노동의 현장에도 민주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저임금과 심한 노동 강도를 피해 국내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던 중소기업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취업하게 되어 균형을 잃어가던 노동시장의 최하층을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서서히 유입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20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미국과 독일, 일본, 중동 등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였던 한국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노동이민이 급격히 줄고 대신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이민노동의 전환기'(migration transition)를 맞이하였으나 IMF이후 밀어닥친 한국경제 위기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을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크게 나누어 미국, 유럽 등 서양 각국에서 온 사람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는데, 특히 서양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서양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차별대우를 없애고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나 우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해결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Ⅲ



차별의 현상과 차별개선 정책

1. 차별의 현상(現狀)	20
2. 차별개선 정책	73

1. 차별의 현상(現狀)

가.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고대사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및 원시사회의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현대인의 진정한 생활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식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원시사회의 인류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며 자연현상과 유해 동물, 그리고 다른 인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데 큰 관심을 가졌다. 고대사회에서는 한 부족의 구성원으로 부족의 안녕과 단결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는 종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일도 발생하였다(Wilds, 1956).

장애인은 악령이나 귀신이 붙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단시하였으며, 이러한 편견과 미신은 민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대사회의 극단적 편견에 사로잡힌 장애인관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장애인을 산야에다 내다 버리거나 자살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또 스파르타와 같은 도시국가에서는 리쿠르구스(Lycurgus) 법전에 따라서 아름답고 건강한 신체에 가치기준을 둔 나머지 장애인을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보고 스파르타의 국가적 번영과 부강이 인간의 최고 가치로 판단하여 장애인을 산야에 유기하기도 하였다(김병하, 1985).

로마에서도 농아자(聾啞者)는 티베르 강물에 던져 익사시키거나 투기장과 흥행장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또 귀족계급의 연회석상에서 노리개 역할을 하도록 광대로 등장시키기도 하였다(Heck, 1953).

사회에서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거 없는 불이익과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교육과 문화, 복지, 그리고 고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편향된 시각과 차별적 처우를 감당해야 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와 각종 인권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이들의 권리가 다소 증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차별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나 편견은 꾸준한 교육활동과 계몽을 통해 해결되어 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한 약하고 소외된 계층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별 개선 노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결과도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경험한 경우를 보면 매우 자주 경험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을 합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 41.5%, 직업생활에서 48.5%로 나타나고 있어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에서 재인용).

1) 교육적 차별

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당면과제는 교육환경의 개선이다. 일반교육 환경과 비교하여 특수교육 환경은 교육권이 특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모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장애아동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수나 학급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2002)의 한 조사에 나타난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반응을 보면 64.5%가 교육환경의 개선, 43.0%가 교육행정 지원, 41.7%가 장애인식 개선, 37.9%가 교육재정의 확보를 당면과제로 반응하고 있고, 장애학생 학부모는 65.4%가 교육환경의 개선, 56.9%가 장애인식 개선, 36.1%가 교육재정 확보, 30.1%가 교육내용 개선과 지역사회지원 확보를 당면과제로 응답하였다.

그 밖에 당면한 과제로 지적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재정의 확보, 교육행정의 지원, 교육내용의 개선, 지역사회지원 확보, 교육방법의 개

선, 교사자질의 함양 등을 들 수 있다.

<표 III-1> 특수교육의 당면과제

단위: 명(%)

구 분	계	교육환경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사자질	장애이해 부족	지역사회 지원부족
계	504 (100)	327 (64.9)	162 (32.1)	186 (36.9)	156 (31.0)	130 (25.8)	82 (16.3)	251 (49.8)	144 (28.6)
특수학 교(급) 교사	151 (100)	327 (64.5)	101 (43.0)	89 (37.9)	75 (31.9)	62 (26.4)	36 (15.3)	98 (41.7)	63 (26.8)
장애학 생부모	269 (100)	176 (65.4)	61 (22.7)	97 (36.1)	81 (30.1)	68 (25.3)	46 (17.1)	153 (56.9)	81 (30.1)

자료: 「2002 한국의 특수교육지표」(국립특수교육원, 2002).

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3)의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이 차별적 상황에 많이 노출되며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차별경험은 ‘자주 차별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16.7%, ‘가끔 차별을 받는다’는 반응이 42.5%로 나타나 학교에서 많은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에서 재인용).

2) 문화적 차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의 장애 차별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화와 여가, 체육활동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에 대해 ‘자주’ 혹은 ‘가끔’ 차별을 받는다고 한 응답이 각각 16.5%와 39.2%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이 55.7%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문화적으로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차별의 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극장, 공연장, 스포츠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가 34.5%

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와 여가 그리고 체육활동 중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방식은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반응이 39.4%로 높았으며 '참는다'는 반응은 22.8%로 나타났다.

가) 장애청소년 문화활동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는 아니지만 장애 청소년을 조사대상 집단으로 문화 활동에 대하여 조사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밝혀졌다(박영균 외, 1999). 이 연구에서 교사와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 장애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청소년의 문화활동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문화차별 현황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47.1%가 장애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5.8%가 매우 불만족스럽다, 23.9%가 보통이라고 답하여 장애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는 3.3%에 지나지 않았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

이들 집단간 응답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문화활동이 불만족스럽다는 데 대해 학부모는 50%, 교사는 48.7%, 시설종사자는 42.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인 교사들의 32.6%가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장애청소년의 문화적 지원 필요성

교사와 시설종사자, 학부모 등이 장애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문화적 지원을 하고자 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83.4%가 장애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문화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6.6%도 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지원에 대해 매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집단간 응답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시설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86.1%의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교사로 84.9%, 학부모는 72.5%의 응답률을 보여 장애 청소년의 문화적 지원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욕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장애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도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년도 1년 동안 문화활동에 참여한 회수를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청소년들이 문화활동 참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의 장애청소년들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간 1~3회 정도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고, 4~6회 정도 참여한다는 응답이 17.5%, 7~9회 참여한다는 의견이 5.8%, 10회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청소년들도 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바람직한 문화지원 형태

정부에서 장애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사와 시설종사자, 학부모 등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7.9%가 장애청소년을 문화활동에 초청하는 등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8.1%가 문화활동 공간 마련이라고 답하였으며, 또 전체의 24.9%는 장애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물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비상구를 마련하는 일 등과 같이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원형태라고 응답하였다.

교사와 시설종사자, 학부모 등 집단별로 응답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초청 등 기회부여에 대해, 학부모의 46%가 응답한 반면, 교사와 시설종사자들은 공히 37.4%가 응답하여 초청 등 기회 부여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청소년들의 건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대해서는 세 집단 중에서 시설종사자들의 30.3%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

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장애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중 가장 절실히 바라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교사와 시설종사자, 학부모 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전체 응답자 중 59.7%가 스포츠활동이 가장 절실한 욕구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9.6%가 영화관람, 16.2%가 고궁 등 명승지 방문, 10.2%가 음악회 참석, 4.7%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이 가장 절실히 바라고 있는 활동 내용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 시설종사자 등 집단간 응답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장애청소년을 위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욕구가 스포츠 활동이라고 답한 학부모가 6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사로 60%, 그리고 시설종사자는 55.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장애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장애인 복지의 현실

가) 의료복지

장애는 장애인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애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 측면에서도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 발생의 약90% 정도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후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발견한 즉시 치료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회적응은 한결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국가도 이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애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① 전달체계, 지역의료재활센터

의료재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의료체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의료보험인데 의료보험 상에는 구조적인 문제와 낮은 진료수가, 필수적인 보장구의 제외, 장기 환자에 대한 대책 미흡 등이 문제다. 또한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곳은 전체 종합병원의 20%미만이다. 이와 같이 의료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적으며 더구나 이들 기관들이 주로 대형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전국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정확히 평가받고 적합한 재활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② 재활의료 관련 전문요원

의료재활에는 재활의학 전문의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의지 및 보장구 제작사, 의료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재활간호사 등 여러 직종의 전문요원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요원은 부족하고, 물리치료사의 경우 20여개 대학에서 매년 1천2백여 명이 졸업하는 등 그 수는 충분하지만 교수진이 부족하여 전문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낮은 보험수가 적용과 인식부족으로 인해 작업치료실 개설을 꺼리고 있다. 그 외에도 언어치료사나 보장구사 등도 자격규정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신분보장이나 전문적인 양성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③ 중증장애가 장애인의 진료 지원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에서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며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순회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그 업무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실적이 미비한 형편이다.

④ 중간 단계의 의료재활 기관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입원하려는 환자가 많아 장기간 입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계로 중풍, 척추손상 등 비교적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장애인 중에는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도 없고 막연히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나) 사회 환경 개선 지원

일상적인 활동 속에 장애인이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접근권이라고 부른다.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도로, 지하철 등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주거시설, 공공시설물에 이르기 까지 생활하면서 장애인이 이동·접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접근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장애인이 지나칠 때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동안 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거리로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정보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① 대중교통 수단

신규로 배치되는 노선버스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방송은 물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도시철도(지하철)와 철도시설에 편의시설을 2004까지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로 배치되는 차량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 설치 및 장애인용 객차 제작, 시각장애인용 유도로 및 장애인 비디오폰 설치, 철도차량 당 1개 이상 객차에 휠체어 승강 장치, 장애인용 화장실 등 구비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자가운전자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변 휴게소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고속도로 이용료 50%할인 등이 있고,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② TV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

현재 캡션이 장치된 TV에는 문자서비스가 되고 있고, 일부 뉴스시간에는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공급시스템 확립을 위한 청력 및 언어 대체기구 보급을 위해 PC통신 가입을 지원하며 2002년부터 수화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 1999년부터 전국 시·도에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해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토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해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

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③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시책을 적극 펼쳐야 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마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공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공장 및 산업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교통시설 등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경사로,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등 공공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편의증진법에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등 조세 관련 법령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 있고,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다.

④ 편의시설 설치의 목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⑤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8.4.11.시행)

⑥ 편의시설 설치 대상

-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통시설 (구체적인 범위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 교통수단 :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④ 편의시설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에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시함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외)

- 특히,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전용 화장실로 설치하지 말고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 부착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 외부 : 도로, 정류소 등 인근 교통시설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점형과 선형 블록 시공

- 건축물 내부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의 전면예 점형 블록 시공

⑤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 이상) 의견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통지

㉑ 편의시설 안내표시

○ 대상 시설의 출입구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지 설치

㉒ 편의시설 설치시기

- 도로의 경우 신설·개축·수선시
- 공원은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시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말함)시
- 교통수단은 구입시
- 통신수단은 설치시

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① 장애인 체육

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은 단순히 즐기는 그 자체 외에도 장애부위의 기능감퇴를 예방하고 나아가 잔존능력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적 효과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체육관 신축비나 운영비에 국한되어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 중심으로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가 가장 필수적이라 하겠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확충 및 일반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

활동은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지방순회 개최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장애인 관심제고 및 국민의식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지방 순회 개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장애인 체육활동은 재활의 주요한 수단이 되므로 체육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장애인들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활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그 질적인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장애의 종류를 초월하여 연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함께 참가하는 기회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관 운영

① 운영주체

자치단체건립 장애인체육관은 건립주체 직접운영 또는 지역 내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법인에서 설치한 장애인체육관은 당해 법인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

장애인체육관의 이용은 지역 내 재가·시설(특수학교 포함) 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이용자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인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관 설치·운영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징수

장애인체육관 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과 같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이용료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및 일반인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

④ 운영비 지원

장애인체육관의 운영비는 체육관의 규모와 체육관을 이용하는 대상 장애인(재가·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내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법인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통합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고용과 실업

2002년 일반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7%임에 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 보고되어 일반인에 비해 12.8%나 낮다.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계층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연령층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특수교육원, 2002).

생애주기에 있어 가장 왕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계층인 40대부터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장애인 실업은 노동의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2002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 일반인의 실업률 2.6%에 비해 11배나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원하는 장애인 4명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10대 후반과 20대의 장애인 실업률은 각각 55.0%와 43.3%나 되어 일반인의 실업률 2.6%와 9.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표 III-2> 장애인과 일반인의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백분율(%)

연령	전체	
	장애인	일반인
계	28.4	2.6
15-19세	55.0	9.0
20-29세	43.3	5.9
30-39세	28.1	2.8
40-49세	26.1	1.7
50-59세	27.6	1.3
60세 이상	25.1	0.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2), 「장애인고용동향」.

장애인 취업분포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를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농업, 기능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하여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구한 것으로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다.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전체의 25.6%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단순노무직 23.4%, 서비스직 21.0%, 기계 장치 조작 등의 일을 수행하는 기능직 18.2%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인의 경우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다음이 서비스직 25.9%, 기능직 22.7% 등의 순이며, 장애인 취업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는 9.9%가, 단순노무직에는 10.8%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장애인과 일반인의 취업분포

단위: 백분율(%)

구 분	계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농 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장애인	100.0	11.1	21.0	25.6	18.2	23.4
일반인	100.0	30.7	25.9	9.9	22.7	10.8

자료: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장애인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등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직업이 전문화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그 수준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2002c)가 실시한 ‘장애인 고용 및 승진실태조사’에서도 상시근로자 장애인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시장 진입전의 차별, 즉 사회구조적 차별과 물리적 차별, 교육적 차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모집 및 채용단계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번 협동연구의 한 참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에서 수행한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차별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35.8%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청각·언어장애가 49.5%, 정신적 장애가 46.3%로 나타났다. 직업생활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의 22.3%가 자주 차별을 받고 있으며, 51.8%는 가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여 전체의 약 74.1%가 차별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차별

성차별이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하여 특정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상의 성차별에 대한 정의로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를 보면, 남녀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말할 때는 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오랜 동안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에 길들여진 한국의 주류문화를 대안적인 양성평등문화로 변혁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주류문화의 저항과 그 문화에 길들여진 여성층의 침묵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간해방적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 근간일 것이다.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불행이 존재하는 한 모두의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특히 권위주의적 정권아래서 열심히 여성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진보적 여성운동가들을 주요 정책수립부서에 배치하면서 일관성 있게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왔다.

무엇보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어 있는 약자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개발이 강조되면서 여성은 크게는 여성 자체가 남성 주류문화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중 특히 취약여성층의 생산적 복지 체계로의 통합의 관점에서 정책을 접근하여야 했다. 즉 여성 전체로서의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동시에 취약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히 여성부의 독립 이래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의 생활화, 여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한국에서 주류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 큰 성차별적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시킨 것은 그리 길지 않다. 봉건왕조와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분단과 독재를 겪으면서 한국의 여성은 주류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오다가 오늘날 사회적 민주화의 여정과 여성운동의 발전에 힘입어 여성에 대한 명목적 차별을 잠재적(감추어진) 차별의 수준으로까지 올려놓았다. 따라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성의 법적, 제도적 위상의 향상과 더불어 실질적 차

별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1) 교육차별

남성중심문화에 젖어있던 한국사회가 급격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여성교육기회의 신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현재 초등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기회상의 차별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교육과정상의 성차별적 관행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차별적 성사회화가 여전히 교육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의 실제화가 필요하다.

양성평등교육개혁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그 동안 분리 운영되던 기술 교과와 가정교과를 통합하여 남녀학생 모두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수하게 됨에 따라, 오랜 동안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기술과 가정과의 남녀분리 이수 문제는 해결되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 시 교육내용의 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한다'로 대체하고, 집필된 교과서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기준에도 범교과 학습내용에 양성평등교육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교과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성역할 고정관념에 터한 교육활동을 지양하고, 학생의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관심, 흥미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사연수 자료를 개발하였다.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라는 연수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서의 양성평등지도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교육부는 여학생의 진로 및 직업의식을 제고를 위해 1998년부터 2개년에 걸쳐 여중생 및 실업계 여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CD-ROM 타이틀 「아로」를 개발하여 전국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각급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교장 재량에 의해 택하도록 권고하였다.

노동부는 여성들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인턴제 활용기업에

여성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1999년 여성부는 여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충심화 학습교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여학생과 여성과학자를 연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격려, 지원하기 위한 ‘여학생 이공계 유인 지원 프로그램’(WISE)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여성비율을 오는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씩 확보하도록 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연구기관에는 인턴연구원 확보를 지원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적 직업으로 인식되어 여학생에게 입학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1998년부터 10%의 여학생 입학할당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경찰대학에 12명, 3군 사관학교에는 총 65명의 여학생이 교육기회를 갖게 되었고, 정원의 40%를 여학생으로 선발해 왔던 한국철도대학은 1999년부터 여학생 입학할당제를 철폐하여 성별 제한 없이 학업성적에 따라 누구나 입학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그 동안 남녀공학 공업계 및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공학과에 따라 여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거나 입학을 제한하여 모집하여 왔던 관행을 철폐하여 입학을 원하는 여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여성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취약여성에 대한 생산적 복지 체계로의 통합, 여성 정보화 능력의 제고, 국제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적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성교육정책이 설정되었다.

2) 고용차별

성차별적 관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법제도화의 면이다. 평등한 교육기회에 의해 동일한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고용과정에서 엄청난 성차별적 관행에 의한 남성 중심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에 의한 고용관행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했다.

일차적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구제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성희롱 등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제정되었다.

한편 국제적 협약에 따른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국적법 개정을 통해 「유엔 여성차별금지협약」 제9조 유보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였고, 그 외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00호)에 가입하였고, 「아동의 매매·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6호)에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및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인 모집·채용에서부터 임금, 교육·훈련·배치, 정년·퇴직·해고 시 일체의 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며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외에도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파견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고용현장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어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임용 시 성차별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한편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2001.8.14 개정). 이에 따라, 산전산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고(근로기준법 제72조), 모성보호비용 중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30일은 고용보험을 통해 분담하게 되어(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을 통하여 분담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여(2001.8.14 개정) 종전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였으나 모든 남녀근로자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중 해고금지, 휴직 후 복직보장, 육아휴직급여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 문화적 차별

국민의 정부는 종전에 정무장관실에서 가지고 있던 여성정책 총괄조정 및 기능의 제한된 기능을 극복하고자 1998년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6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여 관련 부처 내에서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하면서 여성에 대한 범부처간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며 집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2002년까지 여성위원 30%를 달성하고자 여성인적 자원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등 현재까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1998년 7월과 1999년 4월 2차례에 걸쳐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하였는데, 1999년 18%, 2000년 20%이던 목표비율을 앞당겨 1999년 2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0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술직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2000년 여경인력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 당시 여경

비율 1.9%(약 1,800명)를 2002년까지 4%(약 3,600명)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경채용 확대모집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3년부터 매년 5명씩 모집하던 여자 경찰대학생을 입학정원 10%인 12명으로 확대모집, 2000년부터 간부후보생 모집에도 정원의 10%인 5명씩 여자 간부후보생을 모집, 학사경장 20명씩과 일반 여경 576명을 채용하였으며, 여경인력을 교통정리, 교통수사, 청소년, 보안, 경호, 순찰차 근무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찰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1996년부터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목표제가 실시되었고,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전문가, 학교행정가로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예컨대 정부출연연구소의 여성연구원의 비율은 8.5%에 불과하고, 기업체 연구소의 R & D 인력 중 여성비율은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대학 진학 여학생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여교수의 비율은 14%대에 계속 머물고 있으며, 여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진출비율은 10% 미만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진출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립대 주요 행정보직에 여성교수 비율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1년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여교수 현황을 평가 자료로 반영하였으며, 2001년 국립대 구조조정평가사업 평가항목에 여성교수비율을 도입하였고,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 교육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문민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특히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도 당선권 범위 내에 여성 50%를 보장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를 정치관계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0년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여성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약적인 여성참여를 통해 남성주도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양성평등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꽃으로 미화되면서 여전히 여성은 능력보다는 남성적 시각에서의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위치가 중시되었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직장의 문화가 양성평등의 문화로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문화는 소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삶의 총체적 표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여성 참여적 문화가 기존 사회의 남성 중심적 가치와 태도 그리고 문화에 도전하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로 읽기 등 대안적 양성평등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 복지 차별

여성이 사회 속에서 주변화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empowerment) 노력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여성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비난함으로써 남성주의적 정책을 다시 강화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는 여성차별 문제를 외면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예방지침이 제정되었고, 남녀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행형법이 1999년 2월에 개정되고, 방송법이 성차별 금지조항을 두었고(2000.1.12 제정), 「교육기본법」에서 남녀평등교육증진조항을 신설함으로써(2000.1.28 개정) 행형, 방송, 교육 분야에서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게 되었다.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적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조사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여성가장을 위한 특별조치나 미혼모에 대한 배려, 그리고 기초

생활보장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성호주에 대한 지원, 나아가 무엇보다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향후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균등한 지원을 통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적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총체적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연령차별

연령차별은 특정한 연령대에 대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건강이나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연령이 그 사람의 특징을 평가하는 데 진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차별적인 행위로 판단한다.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명시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연령대에 불리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를 차별로 규정한다. 또한 연령을 이용하여 직무·교육·기타 관계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폭력도 이에 포함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a).

연령차별의 금지 영역은 먼저 고용에서 일정 범위 내의 특정한 연령을 제한하여 모집하는 행위, 면접 등을 실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묻는 행위, 동일가치·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연령 소유자에게 임금 인상액·인상률 등을 다르게 하는 경우, 교육이나 배치·승진·해고·퇴직 또는 징계에 있어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화·용역·교통수단·주거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에 따라 대상인원을 선정하거나 교육 기회 등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연령'은 단지 생물학적 현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연령에 맞는' 행동과 언어 사용의 잣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권위의 정당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연령이 권위의 정당화로서 기능할 때, 이것은 종종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무시로 나타남.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논리 속에서 '나이 많음'은 종종 무비판적인 상명하복이나 연소자에 대한 무시, 시선·언어적 폭력 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조차 하지 않거나 성인과 다른 대우는 연소자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의 경험과 훈련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연령차별은 1970년대를 전후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어린이, 십대, 20대의 젊은이 등 전 연령대에 걸쳐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a).

청소년연령 차별문제의 경우,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며 성인의 종속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 즉, 연소자 차별은 연령차별의 범주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다른 성인집단의 연령차별 문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차별 개선을 위한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거나 또는 직접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등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알고 이를 지켜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서,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차별상황을 깨뜨려 나가고 단순히 연령이라는 기준에 의해 배제당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참여와 임파워먼트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권이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성별, 인종별, 계급별,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적·사회적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볼 때,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을 보호·신장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인권교육'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1) 연소자 차별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은 최후의 식민지라고 불릴 만큼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유보 당한 채 '유예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후 형성된 청소년기의 의미는 성인으로 준비해 가는 기간으로서 생산적 노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유예받는 대신 어른에게 허용되는 각종 특권적 행위를 자제하고 성인에게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과 경제적·인구학적 구조 변화로 아동기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며 파편적이고 불안정하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존재양식 또한 일과 여가로부터 분리되어 모든 것을 유보한 채 '학업'에만 열중해야 했던 것에서 벗어나 생산적 노동에의 참여, 문화적·정치적 참여 등 그 동안 면제되어 왔던 다양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함께 경험하는 존재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 동향으로 주목할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의 사회 참여로서, 이제 청소년은 어른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성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책임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을 지연시키며 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여 사회발전 속도를 늦추고 있다. 또한 연령기준이라는 비합리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따른 연령차별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켜 건강한 사회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7%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입시 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와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가 가장 크게 꼽혔으며,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김영지 외, 2003).

9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 인식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권 보장을 위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2003년도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한 청소년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비합리적인 연령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정부는 1991년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듯이,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사회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을 성인의 종속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당한 '차별'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청소년집단에 대한 관심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듯이 청소년의 배제와 시민권 박탈에 대해 심각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다행히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자율·참여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완전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에서 비주류집단으로서 배제되고 차별받아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목할만한 점은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신장과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검증되지 않은 편견만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많은 기본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청소년 차별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청소년이 가지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며 참여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고령자 차별

가) 고령자 차별 이해

노화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물학적으로 성숙된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규칙적인 변화로서, 신체구조나 기능상의 변화뿐 아니라 인간의 적응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 유형까지를 포함하는 변화이다(Harris & Cole, 1986). 즉, 노화는 모든 성숙한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노화와 노인에 대하여 많은 편견과 오해가 만연해 있다.

오늘날 절대적 혹은 상대적인 노인인구 수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수요보다 노인의 욕구가 더 커짐으로써 전통사회의 노인들이 가졌던 높은 사회적 특권과 지위를 현재 노인들은 누리기 어렵게 되었다(Cox, 1988). 산업화와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사회의 중추적인 생산층으로 중시되는 반면, 그러한 기술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은 수동적인 의존층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직업세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증거없이 막연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만으로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이 젊은 노동자에 비하여 뒤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고령 노동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산업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생산성이 연령에 반비례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몇몇 연구들은 고령의 노동자들이 신체적 노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현장경험과 신중성, 인내심의 증가로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Beauvoir, 1970).

나) 고령자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3년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정부가 연령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고령 노동자의 취업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대책에는 연금 개혁을 넘어서는 조치들을 반영해 줄 것을 권고했다. OECD의 이와 같은 보고서는 다수 국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실제로 현재 OECD회원국 인구 중 65세 이상은 22%를 차지하며, 오는 2050년에는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www.joins.com, 2003. 8. 8).

OECD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정년 퇴직제 폐지를 통해 노동 참여 기회의 확대와 청장년과 노년층간의 취업 불균형을 적극 시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 권고사항에는 △ 고령 노동자가 퇴직을 미루도록 고숙련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것 △ 취업알선 기관은 고령 노동자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 △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incentive) 제공을 중단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조기 퇴직을 권리로 간주하지 말 것,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퇴직연령까지 일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www.joins.com, 2003. 8. 8).

이에 따라 이미 1986년에 법적 정년을 폐지한 미국에 이어, 1904년 연금법 제정 이후 법정 퇴직연령이 65세로 유지되고 있던 영국도 유럽연합(EU)의 폐지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과 고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령자의 지위하락은 사회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 차별적 행위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성별이나 연령을 막론하고 모든 비노인 집단들이 공범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 차별적 행위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은 연소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노인의 지위하락과 더불어 세대간의 생활분리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 고정관념을 갖도록 만들었다.

많은 문헌들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현대 사회에서 과장되게 퍼져 있으며(Aiken, 1982), 젊은이들 역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Hummert, 1990; Hummert 외, 1994; Schmidt 외, 1986; 박경란 외, 2001)과 태도(Kite 외, 1988; Vernon, 1999; 서병숙 외, 1999; 한정란, 2000; 2003a)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의 태도는 지식이나 기술 등과 같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발달되고 학습된다. 일반적으로 사회 내의 인식이 노인을 유용하지 못한 존재로서 만연화 되어 있다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들 역시 노인을 사회에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내면화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태도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제로 노인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차별적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노년기로의 삶에 대한 건강한 생각과 습관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Lichtenstein, 1999). 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 간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고령자에 대한 태도와 지식이 편견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 외국인 차별

1) 교육 차별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국적을 가진 어린이만을 교육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입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정신에 어긋나므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 거부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평생교육에도 관련된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국적화도 문제이나 이것은 차후 문제이다.

2) 고용상의 차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이주노동자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그들이 등록된 노동자이든 혹은 미등록 노동자이든 관계없이 임금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노동현장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의 면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 정부가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명국의 일원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노동을 하며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

3) 문화적 차별

한국인은 오랫동안 단일민족문화로 구성된 단일문화권을 형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매우 낮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로 미국이나 일본 등지를 떠돌며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피부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경제권에 흡수한 경험이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1988년 이래 현재 50만이 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산업계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다른 문화가 사회적 편견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4) 복지차별

한국의 복지체계는 일반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발전되어 오지 못했고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국적소지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전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적어고 어린이들과 일반노동자의 보호 및 가족보호에 관한 정책에서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차별개선 정책

이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연령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나 청소년단체,

그리고 각 청소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 장애인, 연령,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차별개선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차별행위가 부당하고 이러한 차별의 결과는 사회의 통합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차별행위 근절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에서 각종 차별에 대해 개선하려는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3년도에 새로 취임한 노무현 정부가 이미 여성, 장애인, 학벌,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차별을 5대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로 차별시정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차별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이라 생각되며 이 연구가 정부의 차별개선 노력에 부응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V



프로그램 개발결과 및 활용방안

1. 프로그램 개발결과	76
2. 프로그램 활용방안	78

1. 프로그램 개발결과

가. 프로그램 개발현황

차별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우선 큰 틀을 구성하였다. 즉 장애인 차별, 여성차별, 연령차별, 외국인 차별 등 4가지 영역이 그 틀의 가장 큰 범주이고 각 영역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현황을 보면 장애인 차별개선 프로그램이 9종,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9종, 연령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연소자와 고령자 차별 프로그램을 합해 모두 10종, 그리고 외국인 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9종을 개발하였다.

<표 IV-1> 차별개선 프로그램 개발현황

영역별 프로그램	장애인 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외국인 차별
프로그램 개발	9	9	10	9

나. 영역별 프로그램 구성현황

장애인 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외국인 차별 등 영역별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표 IV-2> 장애인 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구성

활동영역	단위활동	활 동 내 용
장애인 이해활동	1. 서로 이해하며 살아요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의 차이점을 발견하 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능력 비교 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함께 살 아가는 태도를 함양한다.
	2. 친구야! 학교 가자	통합교육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장· 단점을 알아보며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 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3. 고정관념을 깨자!	비장애청소년이 영화감상을 통하여 장애 의 의미를 이해하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알아본다.
새 문화 창조활동	4. 우리 같이 놀아요	비장애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이 다양한 여 가활동을 통해 비장애청소년으로부터 장 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5. 여행을 떠나요!	비장애청소년과 장애청소년들이 함께 야 외활동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 대방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6. 애니메이션 세상	애니메이션 창작활동을 통해 영상매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협동심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좋은 사회 만들기	7. 좋은 세상 만들기	장애와 관련된 편의시설의 활용가능성 여 부, 개선점 등을 알아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직업의 세계 탐색활동	8. 아르바이트 맞보기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지역사회 직업의 종류를 함께 알아보고 방문해 봄 으로써 직업인으로서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다.
	9. 손길이 닿은 자리	다운증후군 청소년과 사회봉사 명령 대상 청소년이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나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2) 성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표 IV-3> 성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구성

활동영역	단위활동	활동내용
나의 성차별 감수성	1. 차별적 성역할	우리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에 따른 역할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성 역할에 대한 규정이 곧 성차별임을 안다.
	2. 성 차이	성 차이에 대한 분석표를 보면서 성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남성과 여성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성역할의 규정도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3. 20년 뒤의 우리반 반창회	20년 뒤에 모이는 반창회 모임을 상상하며 가상으로 반창회를 재현해 본다. 성적 선입견과 성적인 것에서 오는 기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성차별 교육과 문화	4. 사건현장 (차별)을 찾아서	이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대들이 작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본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의 사례들을 알아본다.
	5. 교과서 속의 성차별	성차별의 사례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의 현장인 교과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안다.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분석해 본다.
	6. 췌! 우리 말속에 성차별이 숨어 있어요.	모든 개인의 개인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언어들을 찾아보고, 그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을 규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본다.
	7. 양성이 평등한 우리학교 만들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양성이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8. 새로 쓰는 동화, 순데렐라?	동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성차별적인 측면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미리 정해진 성 역할이나 외모에 따른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분석해 본다.
양성평 등사회 를 위하여	9. 레디고! 새로 만드는 CF	광고의 콘티 분석을 통해, TV/라디오의 성차별적 요소를 알 수 있다. 기존의 콘티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성차별적 요소를 없앤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을 이해하도록 한다.

3) 연령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표 IV-4> 연령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구성

활동영역	단위활동	활동내용
차별 감수성 함양활동	1. 따로 또 같이	게임활동을 통해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과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편견과 선입견이 차별을 행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2. 거꾸로 본 세상	불공정한 규칙이 적용된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배제와 갈등을 경험하고 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현실을 인식한다.
	3. 20점을 잡아라	게임을 통해 불의와 차별을 경험하고, 다수와 소수집단의 관계, 사회적 약자, 경쟁, 배척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연소자 연령차별 개선활동	4. 출발!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우리사회의 연소자 연령차별 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탐색활동을 펼친다.
	5. 반전, 액션!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영상물 제작·발표활동을 통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청소년 차별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자 연령차별 개선활동	6. 나이는 숫자일 뿐?	‘연령’이 사람을 판단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고령자 차별의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7. 타임머신을 타고 가자 : 노화체험	청소년들이 노화체험을 통해 노화란 자연스러운 인간발달 과정임을 인식하고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킨다.
	8. 미래의 나 : 노인의 새 역할 찾기	노인 역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고,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새로운 역할과 잠재력을 찾아본다.
세대 공동체 교육활동	9. 손에 손 잡고	‘연령차별’ 문제는 결국 서로 다른 연령대인 세대간 문제와 만나게 된다. 세대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10. 인생미로 찾기	살아온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활동을 통해 세대간 이해와 우정, 파트너십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4) 외국인 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표 IV-5> 외국인 차별 개선 교육 프로그램 구성

활동영역	단위활동	활 동 내 용
교육에서 의 차별	1.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는 NO!	학령기 아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외국인노동자 어린이의 현실을 이해하게 한다.
	2. 백인은 미국인, 흑인은 아프리카 인?	거리에서 코가 높은 백인을 보면 무조건 미국사람으로 인식하고 흑인을 보면 아프리카인인줄 알고 멀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고용에서 의 차별	3. 때리지 마세요	외국인 고용상황을 고발하는 사진 중 제일 빈도가 높은 것이 구타로 인한 인권침해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킨다.
	4. 미국시민권은 하 늘나라 티켓?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중국적, 원정출산 등을 통해 한국 사람이 가진 미국시민권에 대한 꿈을 고발하며 미국에서의 한인차별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복지에 있어서 차별	5. 순심씨의 사랑 과 아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둔 한국여성 순심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6. 아이를 맡길 데 가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무료위탁시설 등도 외국인노동자자녀에 대해선 개방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이해하며 대안을 생각한다.
	7. 우리를 돕는 한 국 친구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시민단체를 찾아보고 예방하여 우리가 할 일에 대해 함께 생각한다.
문화적 차별	8. 우리 모슬렘은 테러리스트가 아 닙니다.	9.11이후 기독교의 문으로 본 이슬람 그리고 이라크전쟁을 통해 본 이슬람과 테러와의 연계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한다.
	9. 살색!!!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살색표기 금지를 이해하고 이를 외국인노동자의 관점에서 각자 살색을 나태내보이도록 하여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프로그램 활용방안

가. 프로그램 적용대상

이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부분에 명시하였듯이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몇 개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적용 가능한 대상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나. 프로그램 활용방안

이 연구에서 개발한 차별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나 청소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기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급단위의 교실이나 학교 특별활동실, 강당 등 참가인원 및 대상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에서는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학생 청소년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청소년 인권 옹호단체나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의 한 가지 방법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여기 개발한 구체적인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대상 학생의 지적 수준이나 혹은 신체적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을 하는 교사나 지도자가 이 프로그램을 약간씩 수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활동은 제시된 참고자료와 진행절차를 참고하면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V

.....

결론 및 제언

-
1. 결론
 2. 정책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차별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6개의 정부출연기관 협동연구로 수행된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차별시정 정책수립과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과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차별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권 분야의 연구경험이 있는 공동연구자를 연구진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각 연구자의 부문별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 여성, 연령, 그리고 외국인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각 영역별 혹은 차별의 대상별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차별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큰 청소년을 교육의 주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그만큼 차별개선의 효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출발에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약한 계층인 장애인이나 여성, 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의지가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 2년 반을 지나면서도 이와 같은 개혁과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욱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실행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차별개선에 관한 가시적 효과는 즉각적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만연된 차별관행이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은 인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차별관행이 존재하는 한 사회는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게 되며 불안의 요소가

된다.

차별은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줄 알게 된다면 관용성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영향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가치가 공존하는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2. 정책제언

가. 차별개선 교육활동 강화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과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할애하여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이해와 차별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교교육 차원에서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린 청소년기에 민감한 감수성을 통해 근원적 차별개선책을 마련하게 된다.

청소년단체나 청소년기관에서도 차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이 스스로 차별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나. 차별대상 이해교육

차별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차별의 폐해를 인식하고 차별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차별은 차별행위를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별을 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차별행위를 하는 청소년이 스스로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차별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차별행위를 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별히

문제행동을 일삼는 학생이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차별행위를 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다.

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아직 우리나라에는 차별이나 인권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차별개선 시책은 현재의 수준에서 정책적 노력이나 행정적 지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분야별 혹은 영역대상별 차별개선의 노력은 충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 대상이나 영역에 따라 더 많은 차별개선 또는 차별금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순원(2000).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 강순원(2003). 인권교육적 견지에서 본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의 성과와 한계. 『교육 부문에서의 양성평등 실태 및 과제』. 2003년도 한국교육사회학회 연차학술대회, 27-42.
- 국가인권위원회(2002a).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연구모임.
- 국가인권위원회(2002b).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연구모임.
- 국가인권위원회(2003c). 장애인 고용 및 승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법률 제06481호.
- 국립특수교육원(2002). 2002 한국의 특수교육지표. 국립특수교육원.
- 김영지(1998). 외국의 청소년참여 동향과 우리의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참여. pp. 75-98.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병하(1985).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김정주(1999). 청소년참여.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총론. pp. 477-512. 서울: 양서원.
-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2004. 1. 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 박경숙(2004). 연령주의 사회와 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사회적 차별과 힘의 지배’ 세미나 자료집(2004. 6).
- 박영균 · 김정열 · 이해연(1999).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균 · 김정열 · 이해연(2000).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도(2004). 차별과 참여적 정의: 분배와 인정 패러다임의 대립을 넘어서.

-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세미나 자료집, pp. 4-19. 한국여성개발원.
- 박경란·이영숙(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2), 71-83.
- 서병숙·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오정진·윤덕경·박선영·김도현(2003). 차별관련 법령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가옥·강희설·이지영(2004). 노인 집단프로그램 개발. 서울: 나눔의 집.
- 이병준·이동임·이지연·이옥분·모선희·이화정·이이정·류형선(1999). 21세기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용교·김영지·임지연(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준일(2002).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pp. 212-228.
- 이준일(2004). 소수자의 기본권.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협동과 제 1차 세미나 자료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3).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천정웅·김영지·임지연(1997). 청소년 참여증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김영지·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원기·전명기·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1999). 청소년 권리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10권 제1호, pp. 5-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2). 장애인고용동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1999). 한국장애인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한정란 (2003a)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4), 181-194.
- 한정란 (2003b). 세대갈등을 푸는 지혜: 세대공동체 교육. *대한은퇴자협회 5차 포럼 발표집*, 25-38.

<외국문헌>

- Aiken, L. R.(1982). *Later Lif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eauvoir, S. de(1970). *La Vieillesse*. 홍상희 · 박혜영 역(1994). *노년*. 서울: 책세상.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x, H.(1988). *Later life: The realities of ag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ESCAP(1999). *Youth Participation Manual*.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Harris, D.K. & Cole, W.E. *Sociology of Aging*. 최신타 역(1986). *노년사회학*. 서울: 경문사.
- Heck, A. O.(1953). *Educ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Book.
- Hummert, M. L.(1990). Multiple of elderly and young adults: A comparison of structure and evaluations. *Psychology and Aging*, 5(2), 182-193.
- Hummert, M. L., Garstka, T. A., Shaner, J. L., and Strahm, S.(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240-249.
- Kite, M. E., & Johnson, B. T.(1988). Attitudes toward older and younger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3, 233-244.

- Lichtenstein, M. J., Marshall, C., Pruski, L., Blalock, C., Lee, S., Murphy, D., & Hilsenbeck, S.(1999). Positively Aging TM: Choices and changes creating middle school teaching materials using examples from geriatrics and gerontology. *Educational Gerontology*, 25, 555-569.
- Schmidt, D. F. & Boland, S. M.(1986). The Structure of impressions of older adults: Evidence for multiple stereotypes. *Psychology and Aging*, 1, 255-260.
- Vernon, A. E.(1999). Designing for chang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intergenerational programming. *Child & Youth Services*, 20(1-2), 161-173.
- Wilds, E. H.(1956). *The 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New York: Rinehart & Co.

<인터넷 검색>

경향신문	www.khan.co.kr
교육노년학 홈페이지	geg21.hihome.com
놀이터	http://www.noriteo.lil.to/
놀이하는 아이들	http://www.nol2i.com/
동아일보	www.donga.com
전래놀이	http://members.nate.com/playhome/main.htm
조선일보	www.chosun.com
중앙일보	www.join.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
한국의 민속놀이	http://myhome.naver.com/hodol1735/index.html
The Australian Youth Foundation.	http://www.ayf.org.au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프로그램 개발 □□

박영균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강순원 한신대학교 · 교수 / 교육대학원장
김영지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 연구협력진 □□

박성희 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강윤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 전공
전지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